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7. .
발 의 자	이선우 의원 외 5명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변 호	

발의연월일 : 2021. 7. .

발 의 자 : 이선우 · 김재우 · 박교상
장미경 · 이지연 · 홍난이 의원
(6인)

1. 제안이유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나. 공모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다. 의회보고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라.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42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2. 사업 타당성
 -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 4. 재정협의
 - 5. 사업효과
- ②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 1. 구미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모사업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 발생(안 제6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의 구체적 추계가 불가능함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윤이나(054-480-6335)